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외부기관 파견 인력을 본청 정원으로 책정·운영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 시·도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 국내 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급 이하 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받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직위에 결원을 보충하거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아래 표와 같이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10명)을 본청 정원으로 책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한 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승인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외부기관 파견인력을 본청 정원으로 책정한 사례 >

지자체명	파견현황			정원책정		
	파견기관명	직급	담당사무	부서	직급	반영일자
경북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행정5급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파견	정책기획관	행정5급	2017.9.18.
경북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5급	베트남 호찌민 통상투자주재관	외교통상과	행정5급	2017.1.1.
경북	경북통상(주)	행정5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상투자주재관	외교통상과	행정5급	2007.12.
경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행정5급	일본 동경 통상투자주재관	외교통상과	행정5급	2007.12.
경북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5급	중국 상해 통상투자주재관	외교통상과	행정5급	2003.1.
경북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5급	러시아 연해주 통상투자주재관	외교통상과	행정5급	2021.5.31.
경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행정5급	LA통상투자주재관	외교통상과	행정·농업5급	2000.10.2.
경북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행정5급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파견	외교통상과	행정·농업·해양수산5급	2017.9.18.
경북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행정6급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파견	외교통상과	행정6급	2017.9.18.
경북	외교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행정6급	외교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파견	APEC 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	행정6급	2024.9.9.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외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정원을 정비하시고, 직무파견 절차 준수 및 소속 직원의 정원 책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과 설치 일반요건 미준수(정원 및 명칭)

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문경시, 성주군, 울릉군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과'는 국의 소관 업무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며 독자성, 계속성이 있을 때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국'(국장급 기구)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과장급 기구)은 '팀'으로 각각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및 일부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의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하여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과장급 기구임에도 국장급 기구에 해당하는 '단' 명칭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과 설치 일반요건 미준수 현황 >

자치단체	실·국	과명	정원	위반사항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	항공산업과	11	정원기준 미준수
	산림자원국	산림소득과	11	"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물국	해양레저관광과	11	"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전략기획단	15	명칭기준 미준수
	건설도시국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11	정원, 명칭기준 미준수

자치단체	실·국	과명	정원	위반사항
구미시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11	정원기준 미준수
	첨단산업국	반도체방산과	11	”
성주군	-	축산과	11	”
문경시	-	정책기획단	17	명칭기준 미준수
울릉군	-	안전건설단	18	”

특히, 문경시의 경우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장급 기구에 쓸 수 있는 ‘단’의 명칭을 과장급 기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취지에 맞게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문경시장, 성주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에 대하여 적정한 기능을 보장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구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울진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사업소의 설치 요건으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본청 기구를 폐지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소는 정책기획기능은 배제하고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라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지구·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시·군·구는 사업본부 설치 근거 없음)

그러나 경상북도 산하 시·군의 사업소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다.

1. 사업소 명칭 사용 부적정

포항시는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구미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산시는 '맑은물사업본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사업소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주시는 '맑은물사업본부'를 조례상 사업본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에서 여러 사업장을 통솔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사업본부'를 시·군의 단일 사업소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사업소 명칭 사용 부적정 사례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2. 사업소 소재지 및 기능 부적정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와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은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소의 주요 기능도 아래 표와 같이 특정 현장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시설물 등 관리이거나 정책기획 업무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소 소재지 및 기능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사업소명	주요 기능	사업소 소재지	본청 소재지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재산관리, 도시계획도로개설 • 도로시설물, 가로수 유지보수 등 • 교통안전관련 업무 • 시내외버스 요금 및 노선관리 •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남구 시청로 1	남구 시청로 1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수소산업 육성 기획 •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주변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따라서, 위 두 기관은 “별도의 기관에서,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집행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사업소의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정·현원 관리 부적정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는 각각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설치·운영하면서 정원을 최소 기준인 5명 미만으로 책정하거나, 책정된 정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현원(2~3명)으로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운영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사업소 정·현원 관리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기구명	소장 직급	정원	현원	비고
포항시	서울사무소	5급	4	5	최소정원 미달
구미시	서울사무소	5급	4	3	최소정원 미달
김천시	서울사무소	5급	5	2	장기간 결원 과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구미시장, 경산시장, 울진군수께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 설치요건 및 사업소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정비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부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정·현원 직렬 불일치 및 복수직렬 정원 책정·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업무 성질에 맞는 직렬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책정된 정원에 맞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5.11.28.) 현재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부서별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정원으로 책정된 직렬과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현원으로 임명하거나, 해당 업무 성격과 관련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 또는 일반관리업무가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로 볼 수 없는 직위도 행정직 복수 직렬을 책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읍·면·동장 직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3~4개의 복수직렬로 정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현원은 정원에 책정되지 않은 다른 직렬로 임용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므로 복수직렬 허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사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위반사항: 붙임)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 직렬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정원과 현원의 직렬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 및 인사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1】

< 과장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자치단체	직위	정원	현원
포항시	구룡포읍장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5급	시설5급
	오천읍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5급	공업5급
	송라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5급	시설5급
	두호동장	행정·해양수산·시설5급	사회복지5급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농업5급
	북구청 산업과장	행정·농업·녹지5급	시설5급
경주시	외동읍장	행정·공업·환경5급	시설5급
	문무대왕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공업5급
	양남면장	행정·해양수산·시설5급	농업5급
	산내면장	행정·농업·녹지5급	방송통신5급
	천북면장	행정·농업·공업5급	시설5급
	성건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보건5급
	월성동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시설5급
	안전정책과장	행정·시설5급	공업5급
	수도행정과장	행정5급	공업5급
	사적관리사무소장	행정5급	공업5급
	시립도서관장	행정·사서5급	시설5급
	김천시	어모면장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5급
봉산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의료기술5급
조마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녹지5급
구성면장		행정·간호·시설5급	사회복지5급
평화남산동장		행정·농업·보건5급	농촌지도관
양금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환경5급
울곡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사서5급
문화예술회관장		행정5급	시설5급
구미시	해평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보건5급
	신평1동장	행정·시설5급	보건5급
	비산동장	행정·시설·방송통신5급	녹지5급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보건·의무·간호·의료기술5급	행정5급
영주시	봉현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공업5급
	단산면장	행정·공업·녹지5급	세무5급
	영주1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5급	간호5급
	영주2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보건5급
	감염병관리과장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5급	행정5급
상주시	세정과장	행정5급	사회복지5급
문경시	호계면장	행정·농업5급	시설5급
	산북면장	행정·농업5급	시설5급
	교육지원과장	행정·사회복지5급	보건5급
	환경보호과장	행정·환경5급	시설5급
	교통행정과장	행정·공업·시설5급	농업5급
	문화예술회관장	행정·사서·시설·방송통신5급	간호5급
의성군	점곡면장	행정·농업·보건·시설5급	사회복지5급
	육산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5급	보건5급
	구천면장	행정·농업·환경·시설5급	보건5급

자치단체	직위	정원	현원	
의성군	재무과장	행정5급	시설5급	
청송군	건설새마을과장	시설5급	과학기술4급	
영덕군	달산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시설5급	
	농업정책과장	행정·농업5급	농촌지도관	
	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고령군	민원과장	행정·시설5급	녹지5급	
	투자유치과장	행정·시설5급	사회복지5급	
칠곡군	세무과장	행정5급	농업5급	
예천군	지보면장	행정·농업·수의5급	시설5급	
	곤충연구소장	행정5급·농업연구관	공업5급	
봉화군	명호면장	행정·농업·녹지5급	환경5급	
울진군	울진읍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5급	간호5급	
	죽변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사회복지5급	
	후포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공업5급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5급	사회복지5급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지도관	행정5급	
	울릉읍장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5급	방송통신5급	

【붙임2】

< 6급 이하 정·현원 직렬 불일치(예시) >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포항시	죽장면	행정·농업6급	보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원, 복무관리 • 면민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 자생단체 관리
		행정·농업6급	시설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취득 • 과수, 화훼, 식량 • 발작물, 친환경
경주시	복지정책과	행정·전산8급	사회복지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행사 운영 지원 • 보훈 회관 및 단체 운영 지원 • 현충시설 관리
		행정·보건8급	사회복지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상담 및 관리 •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대상자 연계 •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리
	감포읍	행정·세무6급	전산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위생, 방역 • 체납세징수,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김천시	아포읍	행정·세무7급	녹지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 기획예산, 문화홍보 • 청렴감사, 정보기획
	대덕면	행정·농업·시설6급	의료기술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업무전반 • 미래혁신전략과
구미시	농업정책과	행정·농업7급	사무운영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관리양곡 공급, 관리 • 공공비축미 매입, 도정업관리, 구매 • 농약판매업, 비료생산업 관리
	공원관리소	행정·녹지9급	사무운영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조경, 녹지 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보수(현장민원) • 산불감시및산불예방현장지도
영주시	평은면	행정·사회복지8급	환경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원, 보안
영천시	홍보전산실	행정·전산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판 운영에 관한 사항 • 블로그 및 SNS채널 운영관리 • 뉴미디어 관련 업무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일자리노사과	행정·공업·환경6급	전기운영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업무 • 도시가스시설 승인 관련 사항
	환경보호과	행정·보건·식품위생8급	환경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토양환경 보전 관련 업무 • 수질오염사고 처리 복구
	문화예술과	행정·공업·환경6급	전산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선현 성역화사업 건립 추진 • 임고서원, 최무선과학관 운영 전반 • 노계문학관, 전통문화체험 운영 전반
	사회복지과	행정·보건·간호6급	사회복지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업무 운영 전반 • 사회복지관 · 노숙인시설 운영 •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관련
	임고면	행정·농업6급	의료기술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분야 업무 전반 • 토목, 건축에 관한 사항 • 농지, 농축산 관련 업무
상주시	문화 예술과	행정·시설6급	녹지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보수 및 정비사업
	새마을 체육과	행정·공업7급	위생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산림 녹지과	행정·농업7급	방호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 숲속의 광장 운영 및 관리
	낙동면	행정·시설7급	농업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예산, 평생학습원 • 지역공동체일자리, 계절근로자
	공검면	행정·사회복지9급	농업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문경시	문경읍	행정·농업6급	시설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팀 업무 총괄 • 인사 및 복무관리 • 각종 단체 관리
	문경읍	행정·세무6급	전산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팀 업무 총괄 • 가족관계등록 업무 • 체납세관리 업무
경산시	안전총괄과	행정·시설·방재 안전 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분야 총괄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사전대비 계획 수립 • 사회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압량읍	행정·농업6급	세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의 행정지도, 감독 • 직원복무관리 • 단체관리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압량읍	행정·세무·농업6급	사회복지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 담당분야 총괄 관리
	용성면	행정·사회복지6급	수의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 관리 및 방문상담 • 긴급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성군	옥산면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6급	세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 찾아가는보건복지업무 전반
	사곡면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6급	세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 찾아가는보건복지업무 전반
	청년정책과	공업·보건·환경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팀장 • 생활체육업무 전반
	시설관리사업소	통신운영·전기운영·기계운영·열관리운영6급	위생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서의성탁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영양군	유통지원과	행정·시설·사회복지 7급	농업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고추산업 특구 추진 • 기업유치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지역개발과	기계운영·전기운영·열관리운영8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센터 운영 및 지원 • 도시재생관련 주민교육
청도군	총무과	행정·사회복지·시설 6급	농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력, 세종사무소 업무 총괄 • 국비예산확보 업무 지원 • 국회 및 중앙부처 협조 관련 업무
	의회사무과	행정·농업·복지·시설 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운영 • 운영행정·산업경제위원회 관련 업무
	청도읍	행정·전산·농업6급	간호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소 관리 및 총괄 • 가족관계등록
	각북면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6급	시설관리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팀 업무 전반 • 보안 • 관내 기관단체 관리
고령군	지역경제실	행정·시설관리7급	사무운영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자재 관리 및 통신보안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 • 클라우드시스템 운영관리
	지역경제실	행정·공업·시설9급	운전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업무 •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업무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축산정책과	행정·농업·환경6급	세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관리 cctv지원 •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 • 가축통계 및 시세분석 업무
	대가야읍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동향, 집단민원 처리 • 이,반장 관리업무 및 반상회운영 • 선거관련업무
	덕곡면	행정·세무·농업6급	운전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사무 • 수형인명부 관리 • 신원회보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성주군	성주읍	행정·복지9급	위생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운영 관리업무 • 희망복지지원 업무 • 성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초전면	행정·복지·농업6급	전산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복지 업무 전반 •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 • 가족지원과 업무 전반
	선남면	행정·세무·농업6급	시설관리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부서업무전반 • 가족관계등록 업무
	대가면	행정·농업7급	시설관리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무, 선거업무 • 체육회 관리 • 이장 관리
예천군	홍보소통과	행정·전산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신업무 전반 • 행정통신 현대화 및 신기술 • 군 발주 건축물 정보통신분야 공사 감독 및 검수
	예천읍	행정·농업8급	사회복지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은풍면	행정·농업·시설6급	방송통신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전반 • 가족관계등록업무
	유천면	방호·운전·시설관리· 사무운영6급	위생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원예 • 식량정책 • 유통마케팅
봉화군	주민복지과	행정·보건·간호7급	사회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니어클럽지원, 응급안전관리 서비스사업
	안전재난과	행정·방재안전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업무 전반
	안전재난과	행정·시설7급	방재안전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안전관리(특정대상)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 관리
	보건소	행정·보건9급	의료기술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찾아가는 행복 병원 운영, 취약계층의료안전망구축사업
	청량산도립 공원 관리사무소	행정·시설6급	학예연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팀 업무 전반, 박물관 운영, 조사 연구, 총서 발간
울진군	금강송면	행정·세무·전산·농업 6급	해양수산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정일반, 복무관리, 선거간사
	기성면	행정·농업6급	보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팀 업무 전반, 보안업무, 선거간사
	매화면	행정·세무·농업6급	환경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팀 업무전반 • 보안업무 • 선거간사
	보건소	보건·의료기술·간호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건강팀 업무 전반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울릉군	안전건설단	행정·방재 안전8급	위생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재난안전매뉴얼 관리 및 교육계획 수립 • 지역 안전단체 지원 관리
	관광산림과	행정·녹지6급	공업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 업무 전반 • 산림보호사법업무총괄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협의·신고·변경)
	해양수산과	행정·해양수산9급	시설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개발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 추진 •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및 유지보수 추진
	보건의료원	행정·보건·간호6급	방호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운영보조 및 야간 수납·접수

【붙임3】

< 6급 이하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예시) >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안전정책과	행정· <u>녹지</u> ·시설5급	행정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사항 재난대응자체 훈련 관련 사항 도민안전 문화대학 운영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행정·농업· <u>환경</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전문위원실 예산 및 회계 의원 복지, 교육 표창 업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행정· <u>농업</u> · <u>환경</u>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서무, 회계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및 배부
포항시	바이오미래 산업과	행정· <u>보건</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전략산업 시책 및 사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벤처기업 육성지원 총괄
	의회사무국	행정· <u>사회복지</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주관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행정과	행정· <u>보건</u>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세출외현금 기성실적증명발급 관급자재(3자단가) 구매
	청하면	행정· <u>보건</u> 8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통장 관리 물품 관리 기록물 관리
	죽장면	행정· <u>농업</u> 6급	사회복지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복지팀 업무전반 보건, 방역 위생, 청소, 경로당보수
경주시	해양수산과	<u>행정</u> ·해양수산8급	해양수산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복합행정선 관리 운항 전반(선장) 행정선관리사무소 관리
	회계과	행정· <u>사서</u>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관 지정 공유재산 총조사
	저출생대책과	행정· <u>보건</u> · <u>간호</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시가족센터 업무총괄 결혼중개업 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읍면동 확대 설치
	의회사무국	행정· <u>사회복지</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위원 업무지원
	강동면	행정·세무· <u>간호</u> 8급	간호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지적 공유재산,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관리 방역(위생),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보건행정과	보건· <u>식품위생</u> ·간호 7급	의료기술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병리실 운영, 채혈 및 접수 면역혈청검사(위탁 의뢰) 교도소 수용자 검사, 병리실 비품관리
	보건행정과	보건· <u>식품위생</u> ·의료 기술8급	보건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동지소)통합건강증진 사업 감염병 대응 및 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위드케어 경주 운영 사업(양남면), 양남보건지소 검임
	지역보건과	보건· <u>식품위생</u> ·의료 기술9급	보건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통합 건강교육(어린이 건강튼튼 배움터)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황오동	행정· <u>세무</u> ·간호8급	간호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예방관리, 이웃돕기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및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동시	문화예술과	행정· <u>보건</u>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발굴 경북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엄마까투리 콘텐츠 관리
	체육진흥과	행정· <u>농업</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및 시도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개최 웅부기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국제단위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체육진흥과	행정· <u>보건</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식 및 공식행사 준비 각종 보고회 개최 점등식 행사
	농촌경제 진흥과	행정· <u>세무</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지원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농촌경제 진흥과	행정· <u>세무</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산지유통(국도비)사업 산지유통시설 관리
	안전재난과	행정· <u>해양수산</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 생활안정지원금 예산관리 산불피해 신고 추가 접수 및 민원처리
	안전재난과	행정· <u>해양수산</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 지원업무 병무청 업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문화예술과	행정· <u>보건</u> ·시설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박물관 운영
	지역경제과	행정· <u>전산</u> ·공업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수급 종합계획 도시가스공급계획수립 및 추진 도시가스공급사업
	안전재난과	방재 안전·사무운영· <u>위생</u> 9급	방재 안전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 상황관리 지원 지진관련 업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의회사무국	행정· <u>사회복지</u> ·속기· <u>전기운영</u> 6급	사회복지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진행업무 본회의 업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의회사무국	행정· <u>사회복지·속기·전기운영</u> 6급	전기운영 6급	• 홍보 업무 전반(의정홍보, 언론보도)
	보건소	보건·의료기술· <u>환경</u> 9급	의료기술 9급	• 민원접수 • 영상의학실 운영 및 관리 • 제증명업무
영주시	지방시대 정책실	행정· <u>전산</u> 7급	행정8급	•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조성사업 •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일자리경제과	행정· <u>보건</u> 8급	행정8급	•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 온누리상품권 관리 • 소상공인 지원
	문화예술과	행정· <u>보건</u> 7급	행정8급	•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 금성대군 신단 주변 정비사업 • 문수관광지 조성사업
	영주호개발과	행정· <u>농업</u> 7급	행정7급	•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 수상레저 업무 • 영주호 홍보 및 신규사업 발굴
영천시	기업유치과	행정· <u>환경</u> 8급	행정8급	• 투자유치 업무 •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 투자유치대상 평가
	보건위생과	행정·보건· <u>의료·간호</u> 6급	의료기술 6급	• 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먹거리 조성,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 식품가공산업 발굴,육성
	보건위생과	보건· <u>의료·간호</u> 7급	보건7급	• 지역특화 외식사업 관련 업무 • 음식특화거리 경관조성 • 지역대표음식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보건위생과	보건· <u>의료·간호</u> 7급	보건7급	• 위생용품제조업 지도단속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지도단속
	친환경농업과	농업· <u>수의</u> 7급	농업7급	•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 관련 업무
	친환경농업과	행정· <u>보건</u> ·식품7급	농업8급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행정· <u>보건</u> ·식품위생8급	농업9급	• 한방마늘특구 운영 및 실적관리 • 약초종합처리장 관리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인구교육과	행정·사회복지· <u>보건</u> 7급	행정7급	• 영천시장학회 사무국 운영 • 장학기금 관리 및 기탁업무 •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인구교육과	행정· <u>농업·시설</u> 7급	행정7급	• 학교지원업무 관련 사항 • 교육경비 지원 관련 업무 •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	행정·보건· <u>식품위생</u> 8급	환경9급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토양환경 보전 관련 업무 • 수질오염사고 처리 복구
상주시	북문동	행정· <u>사회복지</u> 9급	행정9급	• 축산, 산림복지, 유통마케팅 • 폐기물스티커 관리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보건소	보건·식품위생· <u>의료</u> <u>기술</u> 9급	보건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업소, 집단위탁습식소 • 위생용품제조업소 영업신고 • 조리사 면허증 교부
	보건소	보건·식품위생· <u>의료</u> <u>기술</u> 9급	보건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음식점 신고 및 관리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 및 관리
문경시	교육지원과	행정· <u>시설</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총괄 관리 • 문경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 운영
	교통행정과	행정· <u>전산</u>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록 및 관리 • 자동차 검사 관리 및 과태료부과 • 자동차등록위반 관리(불법명의 등)
의성군	관광문화과	행정· <u>환경</u>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무업무 • 다중이용문화시설(게임장, 노래방 등)
	청년정책과	행정· <u>녹지</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회,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체육대회 개최
	청년정책과	행정· <u>환경</u>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강좌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청년정책과	행정· <u>농업·녹지</u>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늘리기 • 미혼남녀 만남지원, 다자녀 및 다문화지원
	신공항지원과	행정· <u>농업·시설</u> 8급	행정 8급	• 드론비행시험센터 운영 및 연계사업 발굴
	의성조문국 박물관	행정· <u>속기</u>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놀이터 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 • 물놀이장 운영
청송군	보건의료원	행정· <u>공업·보건·시설</u> 7급	공업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의료원	행정· <u>보건·간호</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원 숙소건립, • 그린리모델링 업무
영양군	농촌경제과	행정· <u>농업</u>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택시 운행 관련 업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지역개발과	행정·시설· <u>사회복지</u> 7급	시설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받기반정비사업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의회사무과	행정· <u>농업·시설관리</u>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녹음 및 속기 • 회의록 작성, 발간, 보관, 열람 • 방청 참관 관련 관리
영덕군	안전재난과	행정· <u>보건</u> 7급	행정7급	• 민방위업무, 을지연습, 재난관리기금
청도군	의회사무과	행정· <u>사회복지·공업·농업</u>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업무 전반 • 본회의 의사진행, 개회사 작성 •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운영 관리
고령군	총무과	행정· <u>사회복지·보건</u> 8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의 조정 • 이·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지도 • 하부기관의 행정지도 및 감독
	재무과	행정· <u>운전·위생·시설</u> <u>관리</u>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공제 관련 업무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환급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군민안전과	행정·방재 안전· 방송통신 9급	시설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정비공사 시공감독 • 수해상습 침수지역 정비 • 재해영향평가 검토
	농업정책과	행정·시설· 보호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 농촌 인력 지원사업
	가족행복과	행정· 사회복지·사서 6급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개선 및 학업신장을 위한 시책개발 •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 학교통합 및 학교지원
성주군	총무새마을과	행정· 전산·방송통신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업무 전반 • 사회단체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재무과	행정· 운전 8급	행정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 업무 전반 • 물품·관급자재 계약 업무 전반 • 일반지출 업무 전반
	가족지원과	행정·사회복지· 의료기술 6급	복지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보육업무 총괄 • 여성정책 종합기획 • 어린이집 운영지원 지도
	가족지원과	행정· 보건·간호 8급	간호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경로당 업무 • 노인일자리 업무
	가족지원과	행정·사회복지· 농업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 군민행복교육 운영 • 지역특화여성취업교육 운영
	산림과	농업·녹지· 수의 7급	녹지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도시숲 조성 및 관리 • 정원 조성 및 관리
	산림과	농업·녹지· 수의 7급	녹지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 임산물 굴·채취 허가 • 조경수 및 분재생산 지원 지도
	산림과	농업·녹지· 수의 7급	녹지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가꾸기사업 • 사방사업 및 사방지 관리 • 산림재해(산사태) 예방 및 복구
칠곡군	동명면	행정· 녹지 9급	행정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
예천군	문화관광과	행정· 세무 7급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문화원 및 예천예총지회 운영지원 •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공연행사 지원 •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홍보소통과	전산·방송통신· 사무 운영6급	전산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예산타당성 검토 • 전산보안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시군구공통기반 및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환경관리과	환경·운전· 전기운영 7급	환경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처리 및 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및 장비 안전 관리 업무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 관리 •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폐기물 처리 실적 입력 관리 • 맑은누리파크 반입차량 관리 • 청소인력 복무 관리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봉화군	미래전략과	행정· <u>세무</u> 9급	행정9급	• 정주여건 개선사업(삼계지구), 전원주택(소로지구) 분양홍보,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8급	• 문화원관리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관광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8급	• 관광지시설물관리, 녹색관광자원 개발
	문화관광과	행정· <u>농업</u> 8급	행정8급	• 무형문화재 및 문화재현황관리, 문화재지킴이지원
	교육가족과	행정· <u>운전</u> 8급	행정9급	• 보육업무, 어린이집 관리지원,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건설교통과	행정· <u>전산</u> 8급	행정8급	•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지하수 개발신고 및 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지도·관리
	재정과	행정·공업· <u>환경</u> 7급	공업8급	• 청사 영선, 청사전기, 승강기 관리
	재정과	행정· <u>세무</u> · <u>농업</u> 6급	행정6급	• 안전기획 업무 전반,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재정과	행정· <u>세무</u> · <u>농업</u> 7급	행정6급	• 재난관리평가, 재난안전교육, 위기관리 매뉴얼
	건설교통과	행정· <u>녹지</u> · <u>시설</u> 7급	행정7급	• 민방위
울진군	경제교통과	행정· <u>전산</u> 7급	행정7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행복택시운영및농촌형교통모델 • 터미널관리
	민원과	행정·전산· <u>보건</u> 8급	전산9급	• 도로명주소 도로망 관리 및 개별주소 부여 • 주소정보시스템(KAIS)운영 • 도로명주소DB관리및홍보
울릉군	문화체육과	<u>행정</u> ·공업·방송통신 7급	공업7급	• 한마음회관 무대감독 업무 • 한마음회관 음향감독 업무 • 한마음회관 조명감독 업무
	보건의료원	<u>행정</u> ·보건·간호8급	간호8급	• 응급의료 장비 관리 및 점검 • 의료기구 및 치료재료 관리 • 감염성 폐기물 관리
	보건의료원	<u>행정</u> ·보건·간호8급	간호8급	• 치매 진료 및 검사 협조 • 금연 지원 사업 진료 협조 • 감염성 폐기물 관리
	보건의료원	<u>행정</u> ·보건·간호8급	간호8급	• 응급의료 장비 관리 및 점검 • 의료기구 및 치료재료 관리 • 감염성 폐기물 관리
	보건의료원	<u>방호</u> ·보건·의료기술 8급	보건8급	• 예산 및 일반회계 • 일반 물품 및 의료장비 관리 • 의약품 계약 및 구입·지출
	보건의료원	<u>방호</u> ·보건·의료기술 8급	의료기술 8급	• 진료환자 및 건강검진자 임상병리검사 • 혈액 은행 관련 업무 • 감염병 관련 검사 및 수질 검사
	보건의료원	<u>행정</u> ·보건·의료기술 9급	의료기술 9급	• 물리치료 업무 전반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책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원 관리 및 인사 운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5.11.28.) 현재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부서별 정·현원을 점검한 결과,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위반 사항 : 붙임) 향후 부서간 정원 조정 또는 현원 재배치 등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경산시장, 의성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고령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울진군수께서는

부서별 인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부서별 정원 초과 인력운영 사례 >

자치단체	실·국	부서	정원(명)	현원(명)	비고	
포항시	-	대변인	17	19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1	24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22	25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13	17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16	19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23	25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31	33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22	24		
경주시	-	건축허가과	23	25		
	문화관광국	관광컨벤션과	17	21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16	19		
	경제산업국	기업투자유치과	18	23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12	15		
	경제산업국	식품위생산업과	16	18		
	농축산해양국	농업정책과	15	17		
	농축산해양국	축산정책과	22	25		
	농축산해양국	해양수산과	22	25		
	도시개발국	건설과	25	29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18	23		
	도시개발국	도로과	30	33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26	33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31	34		
	행정안전국	디지털정책과	17	22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19	21		
	시민복지국	장애인여성복지과	17	21		
	시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17	23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	25	28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32	39		
	환경복지국	산림경영과	18	20		
	환경복지국	도시공원과	13	15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14	19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46	51		
	-	동궁원	10	12		
	-	화랑마을	13	16		
	보건소	보건행정과	43	46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18	21		
	안동시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20	22	
		관광문화국	체육진흥과	14	18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13	15	
		평생복지국	사회복지과	30	34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29	31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5	17		

자치단체	실·국	부서	정원(명)	현원(명)	비고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13	15	
	경제국	투자유치과	15	17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20	26	
	첨단산업국	반도체방산과	11	13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	13	15	
	행정안전국	총무과	36	46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24	26	
	행정안전국	공공시설과	14	16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8	21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	25	27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과	18	20	
영주시	도시건설국	하천과	15	17	
경산시	기획조정국	미래전략과	14	16	
	행정지원국	총무과	26	28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18	20	
	건설안전국	건축과	15	17	
	건설안전국	환경시설사업소	14	16	
의성군	-	시설관리사업소	24	26	
영양군	경제건설국	건설안전과	19	21	
영덕군	-	주민복지과	18	21	
	-	문화관광과	18	21	
고령군	-	건축과	21	23	
	-	시설사업소	18	22	
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22	25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18	23	
예천군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20	22	
	-	체육사업소	16	19	
울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23	27	
	-	수소국가산업추진단	7	10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장기간 운영

기 관 명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예천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임시조직(T/F)은 통상적으로 행정기구로 편제할 만큼의 업무 계속성이 없는 특정 임무의 단기적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비정규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임이 아닌 겸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사일('25.11.28.) 현재 경상북도 시·군의 임시조직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장기간(1년 이상)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임시조직(TF) 1년 이상 운영 현황 >

자치단체	임시조직명	설치일	폐지예정일
포항시	시립박물관 건립TF	'24.1.1.	'29.1.1.
	포스코 상생협력TF	'22.7.7.	'26.7.1.
	건강생활지원센터추진TF	'24.7.1.	'26.7.1.
	학산천 복원추진단TF	'24.7.1.	'26.7.1.
	제2미술관 건립TF	'23.1.1.	'28.1.1.
경주시	APEC 정상회의지원 TF	'24.7.26	'26.1.1.
	역세권개발TF	'23.3.9	'26.7월
	농업시설TF	'23.7.1	'26.1.1.

자치단체	임시조직명	설치일	폐지예정일
구미시	건축안전센터 TF	'24.7.22.	구체적 계획 없음
	자원시설조성 TF	'24.1.10.	
	푸드테크 TF	'24.7.22.	
상주시	농업기술원 이전 TF	'22.1.13.	구체적 계획 없음
	적십자병원부지매입 TF팀	'23.7.1.	
문경시	국제대회 TF	'23.7.1.	'26년 중
	개발사업 TF	'24.1.8.	'26년 중
경산시	공기업설립팀	'24.7.15.	'26년 중
	임당유니콘파크팀	'24.7.15.	'26년 중
예천군	수해복구 TF	'23.7.7.	'25.12.31.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구미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예천군수께서는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조직(TF)은 존속 필요성 재검토 후 직제 반영 또는 폐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주시, 칠곡군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 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으므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된 특수 업무 분야 직위에 대해서는 복수직 정원을 책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경주시와 칠곡군은 아래 표와 같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 행정6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 정원을 책정·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정원 및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행정직과 지방전문경력관 복수직렬 책정 사례 >

자치단체	부서명	정원	현원	분장사무
경주시	신성장산업과	행정6급· 전문경력관나군	행정6급	• 과학산업팀 업무 전반
	아동청소년과	행정6급· 전문경력관나군	전문경력관 나군	• 청소년 활동, 교육, 진로 업무전반 • 진로교육체험센터 •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행정6급· 전문경력관나군	전문경력관 나군	• 교육문화회관 담당(청소년 육성)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 칠곡군수께서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맞게 책정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과장급(4·5급) 정원 책정 및 인사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청송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라 시·군·구의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 5급으로 임명하여야 하나,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실·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명 이내의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이하 “4·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시·군·구 과장의 직급은 원칙적으로 5급이나 실·국(4급)을 설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4급 과장도 일부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5급 또는 4급을 탄력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원을 복수직급(4·5급)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4급 단수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4급 단수 정원은 국장급 기구에만 적용되는 기준임)

그러나 울릉군(인구 9,099명, 실·국 미설치)에서는 4·5급(복수)으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실장(과장급) 2개 직위를 4급(단수)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울릉군 4·5급 정원 책정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직위	직급 기준	현재 정원	비고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4급 또는 5급	4급	
	경제교통정책실장			

한편, 청송군(인구 24,201명, 실·국 미설치)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청송읍장 등 3개 직위를 4·5급 복수직급으로 책정하였고,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은 행정5급, 청송읍장은 4급으로 임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므로 4·5급으로 정원이 책정된 직위에 현원 5급을 임명하였더라도 다른 직위에 4급을 추가로 임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사일(25.11.28.) 현재 청송군의 전(全) 과장급 직위 정·현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설5급으로 정원이 책정된 건설새마을과장 직위에 과학기술4급을 현원으로 임명(25.7.1. 승진임용)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원이 없는 4급 과장급 직위를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 청송군 4·5급 인사 운용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청송군	기획감사실장	4급 또는 행정5급	행정5급	
	총무과장	4급 또는 행정5급	행정5급	
	청송읍장	4급·과학기술4급 또는 행정·시설5급	4급	
	건설새마을과장	시설5급	과학기술4급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 울릉군수께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과장급 복수직급 정원을 재책정하는 등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과장급 기구 설치 및 정·현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 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

같은 규정 [별표2]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농촌지도관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을 복수직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통·폐합된 과·담당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므로 종전의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있던 과·담당관이 통·폐합과 무관한 경우에는 그 직급을 농촌지도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통·폐합과 무관한 농업기술 센터 과장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복수직으로 책정하거나, 책정된 정원(농촌지도관)과 다른 직렬의 공무원(농업5급 등)을 임명하는 등 부서장의 정·현원 관리에 적정을 기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영덕군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부조직으로 1개 과(농업기술과)만 설치하여 소장 과 과장의 통솔범위 및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적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참조) 봉화군은 농업기술센터 일부 기능 본청 이관(22.10.12.) 이후 업무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소장 아래 과장급 직위 없이 4개 팀(6급)으로 운영

<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정·현원 관리 부적정 사례 >

명칭	소장·부서장 직급			부적정 사항
	직위	정원	현원	
포항시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정원과 다른 직렬의 현원 임명
	농촌활력과장 (통합 당시 농촌지원과장)	농업5급·농촌 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함에도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김천시	농촌지도과장	농업5급·농촌 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함에도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기술지원과장	농업5급·농촌 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함에도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청도군	친환경 농업과장	행정5급·농업5급· 녹지5급·농촌지도관	농업5급	통합과 무관함에도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영덕군	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정원과 다른 직렬의 현원 임명, 소장 하부조직으로 1과만 설치하여 통솔범위 중복
봉화군	농정축산과장	행정5급·농업5급	행정5급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미책정
	농촌활력과장	행정5급·농업5급· 시설5급	행정5급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미책정
	농업기술과장	농업5급·농촌 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함에도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지도관	행정5급	정원과 다른 직렬의 현원 임명
	기술보급과장	행정5급·농업5급·농촌 지도관	행정5급	통합과 무관함에도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한편, 문경시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농업 기술센터 소장 하부조직으로 기술지원과와 소득개발과를 두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직제에 규정되지 않은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전략작목연구소TF’를 두면서(24.1.8.) 그 부서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5급상당)으로 임명하여 감사일(25.11.28.)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경시의 조직 운영은 ① 관련 법령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점, ② 직제에 없는 과장급 임시조직을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조직도 >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도관)		
기술지원과 (지도관)	소득개발과 (지도관)	전략작목연구소TF (시간선택제 가급)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김천시장, 문경시장, 영덕군수, 청도군수, 봉화군수, 울릉군수께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정원을 정비하고, 해당 직위에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직급의 공무원이 임명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채정 및 사무분장 부적정

기 관 명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봉화군

내 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는 ‘감독·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연구기관장의 직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시험·조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등을 연구관 직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등 같은 법에서 정한 농촌진흥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한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학예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읍·면·동장 정원으로 책정하여 임명하거나,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인사, 보안 등 일반행정 업무를 분장하는 등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채정 및 사무분장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채정 및 사무분장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부서명	정원	현원	분장사무
김천시	평화남산동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 평화남산동 업무 전반
문경시	가은읍장	행정·농업·시설 5급,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 가은읍 업무 전반
성주군	초전면	행정·세무· 농업6급	농촌지도사	• 면 소관업무 전반 • 인사, 보안, 공인관리
봉화군	소천면	행정·농업 6급	농촌지도사	• 산업업무 전반, 추곡수매, 농지, 산불

조치할 사항

김천시장, 문경시장, 성주군수, 봉화군수께서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부적합한 직위에 정원을 책정하거나, 현원을 임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구미시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직급기준(일반직공무원)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동 규정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담당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청의 보조기관(국장·과장 등)이나 소속기관의 장 등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는 '22. 7. 21. 투자유치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한 투자협력관 직위로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임용을 공고 하면서 근무 부서를 서울사무소(사업소)로 특정하였다. 이후, '22. 9. 13. 김○○을 투자협력관으로 임용하였고 감사일('25.11.28.) 현재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구미시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에서 구미시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을 행정5급(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2. 7. 18.부터 감사일('25.11.28.)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서울사무소 정원 4명, 현원 3명)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투자협력관 김○○이 사실상 서울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특정 분야 보좌기관인 ‘담당관’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께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한 직위에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주의요구

제 목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 미증원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연도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적시성 있는 대처를 위해 인력 증원분(국가정책 수요)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은 국가현안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22년 ~ '23년간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증원 내역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 국가정책 소요인력 미증원 현황 >

지자체명	연도	분야	증원목표 인력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미증원 인력	비고
경상북도	2022	농산물안전분석실	1	1	정원 미반영
경상북도	2022	생태독성관리	2	1	정원 미반영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적정인력 증원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요구),

행정안전부는 '2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미증원 인력에 상응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자체 개선조치)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지방소방기관 설치 시 사전협의 미준수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소방기본법」 제3조에서는 시·도가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에서는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방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 비고 2.에서는 직급이 소방령인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시·도가 직급이 소방령인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 개정 등 설치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소방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지방소방 조직관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일(25.11.28.) 현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5.6.9. 일부개정)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는 소방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급이 소방령인 119안전센터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소방령 119안전센터 >

소방서	119안전센터	센터장 직급	설치 일자
포항남부	일월	소방령	2025.6.9.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기구 설치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정부

시정요구

제 목 119지역대 설치·관할 규정의 조례 규칙 정비 미흡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119지역대를 조례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1.10.14. 개정('22.4.15. 시행)을 통해 종전에는 소방서장이 인력·장비 등 여건에 따라 임의로 설치·운영하던 119지역대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조직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21.10.14. 개정, '22.4.15. 시행) >

개정 前	개정 後
제9조 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중략)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일('25.11.28.) 현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경상북도가 설치·운영 중인 119지역대(총 39개소)에 관한 설치 근거, 명칭, 소재지, 관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가 자치법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119지역대의 조직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119지역대의 설치 근거·사무분장·관할범위 등을 조례 시행규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경북소방본부 소방서별 119지역대 운영 현황 >

연번	소방서	안전센터	119지역대	연번	소방서	안전센터	119지역대
1	포항남부	오천	장기	21	문경	산북	동로
2	포항남부	울릉	북면	22	의성	봉양	금성
3	경주	안강	양동	23	의성	의성	점곡
4	경주	감포	양남	24	의성	안계	다인
5	경주	감포	문무대왕	25	청송	청송	헌서
6	경주	건천	서면	26	청송	청송	안덕
7	경주	황오	내남	27	청송	청송	주왕산
8	안동	법흥	일직	28	영양	영양	수비
9	안동	용상	길안	29	영덕	영덕	지품
10	안동	풍산	하회	30	청도	청도	화양
11	안동	옥동	북후	31	고령	대가야	개진
12	안동	옥동	서후	32	고령	다산	성산
13	영주	풍기	순흥	33	성주	성주	초전
14	영주	풍기	부석	34	칠곡	북삼	약목
15	영천	동부	화남	35	예천	지보	풍양
16	영천	남부	북안	36	예천	지보	용궁
17	영천	신녕	청통	37	봉화	춘양	석포
18	상주	함창	은척	38	봉화	명호	재산
19	상주	화서	모서	39	울진	후포	기성
20	상주	화서	화북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지방 소방조직과 정원이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 규모로 유지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는 소방청장이 매년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침 등을 정한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이 시·도로 통보한 “지방소방 조직관리 지침”은 출동대의 소방력 편성·운영에 있어 현장대원의 원활한 작전 수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 기능을 통합·효율화하여 출동대의 현장 소방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관할 소방서의 부서별 소방력 편성·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119안전센터 등의 현장인력을 소방서 행정부서의 인력으로 충원(지원근무 형태)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붙임 참조). 이는 현장 소방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이 확보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인력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현장인력을 행정인력으로 운영한 사례 >

(단위: 명)

구분	기관(소방서)	과	담당	㉠정원	㉡현원	지원근무 (㉡-㉠)	지원인력 근무부서
계				390	491	101	
1	포항북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2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5	+2	안전센터2
3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7	8	+1	구조대
4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구조대
5	포항남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1
6		소방행정과	예산	3	5	+2	안전센터2
7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8	9	+1	안전센터1
8		재난대응과	구조구급	6	7	+1	안전센터1
9		대응단	화재조사	7	8	+1	안전센터1
10	경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11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5	+2	안전센터2
12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8	9	+1	안전센터
13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14		재난대응과	대응지원	5	6	+1	안전센터
15	김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16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17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5	6	+1	안전센터
18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6	7	+1	안전센터
19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20		현장대응단	현장지휘	13	14	+1	안전센터
21	안동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22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23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5	6	+1	구조대
24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6	7	+1	안전센터
25		재난대응과	대응지원	5	6	+1	안전센터
26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27	구미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28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29		예방안전과	소방민원	5	6	+1	안전센터
30		119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31	영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4	5	+1	안전센터
32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33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34	영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35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36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7	8	+1	안전센터
37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38	상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1
39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1
40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1
41	문경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1
42		재난대응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1
43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1
44	경산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45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46		예방안전과	화재 안전 조사	8	9	+1	안전센터
47		재난대응과	대응지원	5	6	+1	안전센터
48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49	의성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50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51		119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52	청송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1
53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1
54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4	5	+1	안전센터1
55		재난대응과	구조구급	3	5	+2	안전센터2
56	영양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5	6	+1	정원2% (안전센터)
57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58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4	5	+1	안전센터
59		119재난대응과	대응구조구급	5	8	+3	정원2%범 (안전센터3)
60	영덕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61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62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구조대
63	청도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64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65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5	6	+1	안전센터
66		재난대응과	구조	3	4	+1	안전센터
67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안전센터
68	고령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5	7	+2	정원2%내 안전센터2
69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정원2%내 안전센터1
70	성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5	7	+2	안전센터2
71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1
72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구조대1
73	칠곡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1
74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5	+2	안전센터2
75		예방안전과	화재조사	6	7	+1	안전센터1

76		재난대응과	구급	2	4	+2	안전센터2
77	예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8	+2	안전센터 2
78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1
79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4	5	+1	안전센터 1
80		재난대응과	구급	2	3	+1	구조대 1
81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정원2%내 1명
82	봉화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1
83		예방안전과	예방총괄	4	5	+1	구조대1
84		재난대응과	대응지원	5	6	+1	안전센터1
85		예방안전과	구조구급	3	5	+2	정원2%내 2명
86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6	7	+1	안전센터
87	울진	소방행정과	예산회계	3	4	+1	안전센터
88	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행정지원	5	6	+1	119항공대 (구조구급 일근)
89	산불대응단	운영지원팀	신청사	8	9	+1	산불대응 3팀

행 정 안 전 부

주의요구

제 목 간부급 공무원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포항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10조, 제14조, 별표2 및 별표3에 의하면 시·도 소속 3급 공무원은 실·국·본부장 또는 일부 담당관(기획·감사 등), 시·군·구 소속 5급 공무원은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또는 읍·면·동장에 상당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급 이하 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또는 시·도지사)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같은 지침 제16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담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아래 표와 같이 본청의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보충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파견하고, 이에 따른 결원 직위는 차하급자를 전담 직무대리로 장기간 지정해 운영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간부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하급자의 정원을 이용해 상위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

지자체명	비별도 파견 현황			직무대리자 직급
	직급	파견기관(직위)	파견기간	
경상북도	3급	국립경국대학교 (K-ER 협업센터장)	'24.1.1 ~ '25.12.30.	4급
포항시	5급	포항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	'21.7.1. ~ '24.12.31. '25.1.1. ~ '25.12.31.	6급
		포항문화재단 (사무국장)	'20.7.1. ~ '23.7.31. '23.8.1. ~ '24.7.11. '24.7.12. ~ '26.6.30.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께서는

간부급 공무원 파견 후 결원되는 직위에 대하여 결원보충 승인없이 장기간 과도한 직무대리 운영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보좌기관 설치 부적정

기 관 명 경주시, 의성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하며,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같은 규정 제6조 제4항에서는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 기획, 홍보, 감사 등 특정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좌기관이라 함은 담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 담당관의 업무 : 제6조 제4항 각 호 관련 >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과(課)는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시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이므로 담당관과는 그 명칭 및 업무에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주시, 의성군은 아래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과(課)를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보좌기관 관련 경주시·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경주시>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대외소통협력관,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미래전략실·청렴감사관·건축허가과를 둔다.

<의성군>

3조의2(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 의성군수께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5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시·도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자체 검토 후 폐지, 통폐합 또는 협의체 전환 등 위원회 정비기준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129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속한 정비(조례·규칙 개정 등)가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통폐합 등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상 북 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제26조(자문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2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7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4조(지역위원회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3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제6조의2(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5
경 북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	16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7
	환경정책위원회 제25조(환경정책위원회)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3
경 북 경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제11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를 둔다.			○	14
	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2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0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5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8
	청소년육성위원회 제4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5
경 북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3
	산업입지심의회 제9조(심의회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등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3
경 북 안동시	지역돌봄협의체위원회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내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7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안동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6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둔다.			○	17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5
	온천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	10
경 북 구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제18조(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도시재생위원회 제9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6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영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2
	노사민정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5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제7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로컬푸드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5
	식생활 교육위원회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1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	9
	양성평등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영주시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7
	공세계과학관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세계과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1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경 북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5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18
경 북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제1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1
	안전관리자문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제7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시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문경시	오미자테마공원운영위원회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오미자테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실행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4
	한옥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1
경 북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5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9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제23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14
	문화예술회관 건립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경산시	직거래활성화협의회 제14조(직거래활성화협의회 설치·기능) 시장은 직거래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0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 공원 및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경 북 의성군	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 제4조 (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용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6
	농수산물브랜드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브랜드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10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제2조(설치) 지역단위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0
	산수유보호육성관리위원회 제3조(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설치) ① 산수유의 보호·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수 소속에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3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1
	안전관리자문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1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의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15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운생태공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청년정책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4
	지역돌봄협의체 제13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군수는 관내 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돌봄 및 아동복지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0
경 북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7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0
	아동여성군지역연대운영위원회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청송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청송군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내수면어업조성협의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7
	안전관리자문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물가대책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5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10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0
경 북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영양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0
	안전문화운동 영양군협의회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2호의2·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9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		10
경 북 영덕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덕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2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덕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7
	장애인등의편의시설심의위원회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주민소득기금운용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영덕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학교급식지원센터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경 북 청도군	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청도반시 보존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9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8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5
경 북 고령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고령군사편찬위원회 제1조(목적) 고령군사 편찬을 위하여 군에 고령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
경 북 성주군	참외산업발전위원회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기타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참외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칠곡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3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2조(기능)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2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 제26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19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의 제21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9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칠곡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7
경 북 예천군	공동주택품질검수단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51
	농촌협약위원회 제14조(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를 둔다.			○	14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예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예천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예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경 북 봉화군	봉화퍼스트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봉화퍼스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	4
	인구정책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5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문화관광 문화해설사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양성교육과정 대상자의 모집,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배치 등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6
	물가대책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8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봉화군	아이돌봄지원사업조정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속으로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제5장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관리·운영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6
	사계절 농산물 나눔장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나눔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봉화군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울진군	금강송 보전위원회 제7조(금강송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강송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울진군 금강송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9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9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3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민원조정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의로운 군민에 대하여 표창,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10
	지역돌봄협의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존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향토문화유산 보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 북 울진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제7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1
경 북 울릉군	북면주민자치위원회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20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제20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5
	쇼핑몰 운영 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미흡

기 관 명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말 기준,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정보 6대 지표*를 17개 시·도로 공문으로 각각 통보 하면서('25.3.10., '25.9.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① 공무원 정원, ② 과장급 이상 비율, ③ 공무원1인당 주민수, ④ 현장공무원 비율, ⑤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⑥ 실·국·본부 수

그러나, 감사일 현재('25.11.28.)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아래와 같이 조직정보 공개자료를 현행화하지 않는 등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미흡 사례 >

자치단체	미흡사항
경주시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김천시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안동시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청송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6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영양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6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영덕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자치단체	미흡사항
칠곡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3.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예천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봉화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울진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4.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울릉군	▶ 공개자료 현행화 미실시('23. 12월말 기준 자료 공개 중)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의적절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기 관 명 경상북도,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등)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 ⑨ 자문기관 운영 현황

그러나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붙임)

이에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예천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현황 >

구 분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23.11.23. '24.11.8.	'21.12.20. '22.12.7. '23.12.28. '24.12.26.	'21.11.25. '22.12.8. '23.12.13. '24.12.5.	'21.12.7. '22.12.12 '23.12.8. 24.12.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16. '24.11.14.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23.11.23. '24.11.8.	'21.12.20. '22.12.7. '23.12.28. '24.12.26.	'21 미제출 '22.12.8. '23.12.13. '24.12.5.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2.8. '24.12.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16. '24.11.14.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23.11.23. '24.11.8.	'21.12.20. '22.12.7. '23.12.28. '24.12.26.	'21.11.25. '22.12.8. '23.12.13. '24.12.5.	'21.12.7. '22.12.12 '23.12.8. '24.12.6.	'21 미제출 '23.6.26. '23.11.16. '24.11.14.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23.11.23. '24.11.8.	'21.12.20. '22.12.7. '23.12.28. '24.12.26.	'21 미제출 '22.12.8. '23.12.13. '24.12.5.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2.8. '24.12.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16. '24.11.14.

구 분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해당없음 '24.11.8.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2.8. '24.12.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16. '24.11.14.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23.11.23. '24.11.8.	'21.12.20. '22.12.7. '23.12.28 '24.12.26..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12.8. '24.12.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16. '24.11.14.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1.12.17. '22.12.30. '23.12.12. '24.12.3.	'21.11.23. '22.11.23. '23.11.23. '24.11.8.	'21.12.20. '22.12.7. '23.12.28. '24.12.26.	'21.11.25. '22.12.8. '23.12.13. '24.12.5.	'21.12.7. '22.12.12 '23.12.8. '24.12.6.	'21 미제출 '23.6.26. '23.11.16. '24.11.14.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11.14. '24.11.12.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6.5. '24.6.3.	'21 해당없음 '22.9.26. '23.6.13. '24.6.18.	'21 해당없음 '22.9.19. '23.6.8. '24.6.10.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5.24. '24.5.21.

구 분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 미제출 '22.12.12. '23.12.5. '24.12.6.	'21.12.17. '22.12.20. '23.12.20. '24.12.20.	'21.11.19. '22.11.18. '23.11.17. '24.11.20.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24. '24.11.22.	'21.11.30. '22.12.13. '23.12.8.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 미제출 '22.12.12. '23.12.5. '24.12.6.	'21.12.17. '22.12.20. '23.12.20. '24.12.20.	'21.11.19. '22.11.18. '23.11.17. '24.11.20.	'21.11.25. '22.11.24. '23.11.24. '24.11.22.	'21.11.30. '22.12.13. '23.12.8.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 미제출 '22.12.12. '23.12.5. '24.12.6.	'21.12.17. '22.12.20. '23.12.20. '24.12.20.	'21.11.19. '22.11.18. '23.11.17. '24.11.20.	'21.11.25. '22.11.24. '23.11.24. '24.11.22.	'21.11.30. '22.12.13. '23.12.8.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1 미제출 '22.12.12. '23.12.5. '24.12.6.	'21.12.17. '22.12.20. '23.12.20. '24.12.20.	'21 미제출 '22.11.18. '23.11.17. '24.11.20.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1.24. '24.11.22.	'21.11.30. '22.12.13. '23.12.8.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구 분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1 해당없음 '22.12.12.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12.17. '22.12.20. '23.12.20. '24.12.20.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1.12.15. '22.12.12. '23.12.5. '24.12.6.	'21.12.17. '22.12.20. '23.12.20. '24.12.20.	'21.11.19. '22.11.18. '23.11.17. '24.11.20.	'21.11.25. '22.11.24. '23.11.24. '24.11.22.	'21.11.30. '22.12.13. '23.12.8.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2.7. '23.2.6. '24.1.30.	'21.5.31. '22.9.7. '23.5.31. '24.6.3. '25.6.2.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8.19. '23.5.22. '24.11.4.	'21 해당없음 '22.9.16. '23.6.8. '24.6.12

구 분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 미제출 '23.1.5. '24.1.4. '25.1.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2.12.12. '23.12.15.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3.1.19. '23.12.26. '24.12.10.	'21 미제출 '22.11.29. '23.12.1. '24.12.3.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 미제출 '23.1.5. '24.1.4. '25.1.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2.12.12. '23.12.15.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3.1.19. '23.12.26. '24.12.10.	'21 미제출 '22.11.29. '23.12.1. '24.12.3.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 미제출 '23.1.5. '24.1.4. '25.1.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2.12.12. '23.12.15. '24.12.4.	'21 미제출 '22.12.5. '23.12.5. '24.12.3.	'21 미제출 '23.1.19. '23.12.26. '24.12.10.	'21 미제출 '22.11.29. '23.12.1. '24.12.3.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1 미제출 '23.1.5. '24.1.4. '25.1.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2.12.12. '23.12.15.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미제출 '23.1.19. '23.12.26. '24.12.10.	'21 미제출 '22.11.29. '23.12.1. '24.12.3.

구 분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12.12. '23.12.15. '24.12.4.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1 미제출 '23.1.5. '24.1.4. '25.1.6.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12.20. '22.12.12. '23.12.15. '24.12.4.	'21.12.24. '22.12.5. '23.12.5. '24.12.3.	'21 미제출 '23.1.19. '23.12.26. '24.12.10.	'21 미제출 '22.11.29. '23.12.1. '24.12.3.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11.25. '22.11.24. '23.11.21. '24.11.21.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11.16.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08.26. '23.05.30. '24.06.03.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5.30

구 분	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1.12.10. '22.12.9. '23.12.12. '24.12.5.	'21 미제출 '22.12.2. '23.12.4. '24.12.3.	'21.12.20. '22.11.24. '23.11.24. '24.11.22.	'22.1.7. '22.12.15. '23.12.7. '24.12.4.	'21.12.13. '22.12.14. '23.11.28. '24.12.3.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1.12.10. '22.12.9. '23.12.12. '24.12.5.	'21 미제출 '22.12.2. '23.12.4. '24.12.3.	'21.12.20. '22.11.24. '23.11.24. '24.11.22.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2.7.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3.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1.12.10. '22.12.9. '23.12.12. '24.12.5.	'21 미제출 '22.12.2. '23.12.4. '24.12.3.	'21.12.20. '22.11.24. '23.11.24. '24.11.22.	'22.1.7. '22.12.15. '23.12.7. '24.12.4.	'21.12.13. '22.12.14. '23.11.28. '24.12.3.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1.12.10. '22.12.9. '23.12.12. '24.12.5.	'21 미제출 '22.12.2. '23.12.4. '24.12.3.	'21.12.20. '22.11.24. '23.11.24. '24.11.22.	'21 미제출 '22 미제출 '23.12.7. '24.12.4.	'21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3.	

구 분	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12.7. '24.12.4.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1.12.10. '22.12.9. '23.12.12. '24.12.5.	'21.12.15. '22.12.2. '23.12.4. '24.12.3.	'21.12.20. '22.11.24. '23.11.24. '24.11.22.	'22.1.7. '22.12.15. '23.12.7. '24.12.4.	'21.12.13. '22.12.14. '23.11.28. '24.12.3.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21.1.7. '22.1.13. '23.1.12. '24.1.9.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11.27. '24 미제출	'21.11.08. '22.11.15. '23.11.14. '24.11.11.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1 해당없음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